



어차피 언젠가는 상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포함한 상법 개정안,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지난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환송되게 되었다. 이후 국회는 4월 17일 오후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국회에서 재의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가결되는데, 금번 상법 개정안은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표1] 상법 개정안 발의 및 처리 주요 Event

2024.11.19	이정문 의원 등 18인 개정안 제안
2024.11.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4.11.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5.01.22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5.02.24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5.02.27	국회 본회의 상정 유예
2025.03.13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통과
2025.04.01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5.04.17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부결

자료: 국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비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개정 추진 과정 중 제외됨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개정 추진 과정 중 제외됨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 ^주	

자료: 국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 &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규정은 유지하되 그 외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인원 수 요건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임

Comment

금번에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도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이다. 당 초에는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기업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제외됐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및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등의 항목도 재추진 시에는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개정 항목들의 포함 여부보다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를 상법으로 입법할 것인지 자본시장법으로 입법할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된다.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는 그 해 12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상법을 통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1) 소송 남발, 경영권 공격 증가,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등이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2) 만·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 증대로 이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을 통해 입법하더라도 그 후 수 년 내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3]을 보면, 상법을 통한 도입과 자본시장법을 통한 도입을 비교했을 때 적용 대상이 상장회사에 한정되는 지 여부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나, 현재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규정된 특정 행위에 한정하여 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맹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상법에 입법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진영이 우려하는 부작용들은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공고히 마련함으로써([표4] 참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vs. 자본시장법 개정안 비교

구분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참고
적용 대상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와 중소·중견기업들에게까지 적용	적용 대상이 상장회사로 한정됨	· 2023년 말 기준 국내 비상장회사는 약 103만개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400여 개사
적용 행위	이사의 직무 전반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여야 함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의 행위를 하면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좌측 밑줄 친 부분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4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

자료: 국회, 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소 제기 남용 방지 대책

책임추궁 등의 소가 특정 개인주주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오로지 해당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인 경우,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일본
특정 지분을 또는 특정 금액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미국 뉴욕주
원고 주주가 다른 주주를 대표할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를 원고적격으로 요구	미국
소 제기 전 법원의 소송허가를 득하도록 입법	캐나다·호주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상사법연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